

日本 자판기 관계법령해설(4)

주세법 ·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합등에 관한 법률 · 미성년자 음주금지법

주세법의 해설

주세법제정의 경위

주세법은 소화28년 2월에 법률 제 6호로서 제정되어, 동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주세법은 제 1조 이하 62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을 단기에 시행하기 위해 소화 37년 3월에 정령으로서 「주세법시행령」이 대장성령으로서 「주세법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었다.

자판기에 관련한 정부령 · 부처령 · 통지등

「주세법 시행령」(소화37년 3월)

「주세법 시행규칙」(소화37년 3월)

「주류의 판매업 면허등의 취급에 관해서」(국세청통지 · 소화38년 1월 간주 2-2)

「자동판매기에 의한 주류소매업 면허의 취급에 관해서」(국세청통지 · 소화48년 7월 간주 3-27)

「주류에 의한 적정한 표시등에 관해서」(국세청 간세부장 통지 · 소화 59년 7월 간주 2-24)

「미성년자의 음주방지에 관한 표시기준의 취급에 관해서」

(국세청통지 · 평성2년 3월 간주 3-7)

「자동판매기의 적정한 설치등에 관해서」(국세청 통지 ·

평성3년 4월 간주 3-34)

「주류판매에 있어서 미성년자 음주방지를 위해 매매계약에 관한 지도에 관해서」

(국세청통지 · 평성 10년 4월 과주 1-18, 과세 3-11)

자판기에 의한 주류 판매에 필요한 조건

●주류 판매업의 면허가 필요

주류의 판매에 있어서는 주세법등 9조에 의해 판매장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자판기에 의한 주류판매는 주류판매업자가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가게 앞에서 할 경우에는 따로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류 판매업의 면허는 주류 도매업 면허와 주류 소매업 면허로 구분되며, 주류 소매업 면허는 다시 대형 점포 주류 소매업 면허, 일반 주류 소매업 면허, 특수 주류 소매업 면허로 구분된다.

자판기에 의한 주류 판매의 조건에 관해서는 소화 38년 1월의 국세청 통지 「주류의 판매업 면허등의 취급에 관해서」에 의해 자판기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 면허 신청자는 자판기의 소유자 또는 자판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의 소유자,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로 할 것, 자판기는 쉽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고정시켜 놓을 것이 규정되었다.

●일반 주류 소매업 면허의 허가요건의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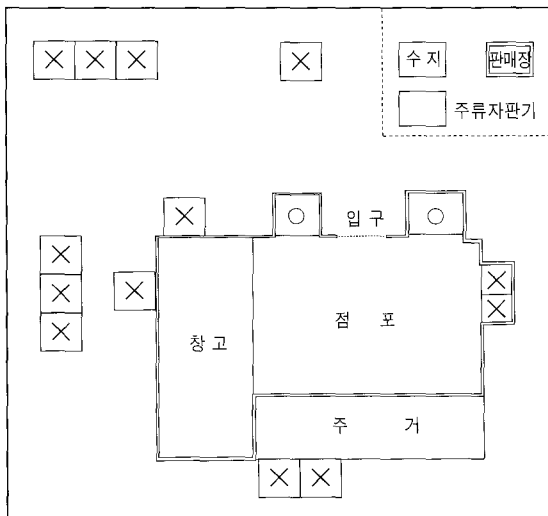
일반 주류 소매업 면허의 허가요건에는 「인적요건」「장소적 요건」「수급조정상의 요건」이 있다. 인적요건이란 신청자의 판매능력, 소요자금, 경영자세, 판매체제 등이다. 장소적 요건이란 기존 판매점과의 기준거리이다. 수급조정상의 요건이란 신청장소의 기준인구이다. 국세청은 평성 10년 3월에 「주류판매업 면허등 취급요강」을 개정해 장소적 요건에 관해서는 평성 15년 9월 1일 이후 폐지하는 것으로 일반 주류 소매업의 허가요건이 완화되었다.

자판기의 설치장소에 관한 규정

●자판기는 점포에 인접하여 있을 것

주류자판기의 설치장소는 평성 3년 4월의 관세부장 주재 전국소매주관조합중앙회에서 완성된 통지 「자동판매기의 적정한 설치에 관해서」에 의해 점포에 병설시 원칙적으로는 점포의 입구가 있는 쪽으로 하고, 또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주류 자판기의 설치장소의 지도기준



(주) ○ 주류의 자판기의 설치장소로서 바람직한 장소
 × 주류의 자판기의 설치장소로서 문제가 있는 장소
 (자판기의 설치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장소)

주류점 이외의 장소에서 자판기에 의한 주류판매

●자판기에 의한 주류판매

자판기에 의한 주류판매는 일시 인정되어 있었으나 소화 48년 7월의 국세청 통달 「자동판매기에 의한 주류 소매업 면허 취급에 관해서」에 의해 미성년자의 음주방지 및 음주 운반방지의 관점에서 당분간 면허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음점내에서의 자판기에 의한 주류판매

요리점이나 술집의 과음업자가 그 영업장에서 음용을 위해 자판기에 의해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통행인이 이용 가능한 점포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필요로 한다.

●호텔에서의 자판기에 의한 주류판매

호텔의 복도나 자판기 코너 등 객실이용자 이외의 자가 이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 자판기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객실에 비치된 냉장고와 같은 것으로 보고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객실이용자 이외로도 구입 가능한 로비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원식당에서의 자판기에 의한 주류판매

사원식당에서의 자판기에 의한 주류판매에 관해서는 기업이 제 3자에게 식당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영자가 식품위생법에 의해 음식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과음업자이기 때문에 전술한 대로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식당의 영업시간 외에도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기업 스스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식당점 영업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과음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는 주류판매업의 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판기에서 판매 가능한 주류

●자판기에서 판매 가능한 주류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의 경우 맥주, 일본주, 위스키, 소주 등 전체 주류로서 취급되어 진다.

자판기에 의한 판매에 있어서도 취급주의 종류에 있어 제도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컵식자판기에 의한 주류판매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는 것이 주세법 상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지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 영업의 면허를 필요로 한다.

단지 기존에 음식점 영업의 면허를 받고 있는 술집, 대리점등이 점내에서의 주류공급을 위해 컵식자판기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영업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 주류 판매업의 면허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자판기에서의 청량 음료수와의 병매는 원칙금지

주류자판기에 청량 음료수를 넣어 판매하는 것에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용기 등이 청량음료수와 유사한 저알콜의 병포장 음료가 유행한 때부터 국세청이 소화 59년 7월에 주류업 중앙 8단체 대표자에서 완성된 관세부장 통지「주류에 대한 적절한 표시등의 실시에 관해서」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도하고 있다.

「자판기에 의한 판매에 있어서는 원칙으로서 주류와 청량 음료수를 혼재하지 않게 배려하는 것과 함께 청량 음료수용의 자판기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말 것, 주류와 청량 음료수의 병매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청량 음료수를 진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주류를 진열하지 않는 것과 함께 자판기의 구조상 분리할 수 없어 주류와 청량 음료수를 혼재하여 진열하는 경우에는 「주류가 있는」 표시를 자판기에 하도록 되어 있다.

벌칙규정

● 면허를 받지않고 자판기로 주류를 판매한 경우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주류를 판매한

경우는 자판기, 점포, 무점포등 판매 형태와 상관없이 주세법 법제 66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진다.

법률조문

주세법 (초) (소화 28년 2월 28일 제정)

(과세물건)

제 1조 주세에는 이 법률에 의해 주세를 부과한다.

(주류의 정의 및 종류)

제 2조 이 법률에 있어 「주류」란 알콜 1도 이상의 음료 (박된 알콜 1도 이상의 음료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것 (알콜이 90도 이상의 알콜 중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의 원료로서 그 면허를 받은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것 이외의 것을 제한) 또는 용해해서 알콜 1도 이상의 음료로 하는 것이 가능한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주류는 청주, 합성청주, 소주, 미림, 맥주, 과일주류, 위스키류, spirits (스피릿츠)liqueur (리퀴르) 등 10종류로 분류한다.

(주류의 판매업 면허)

제 9조 주류의 판매업 또는 면허의 대리업자 혹은 매개업 (이하 「판매업」으로 명칭한다)을 하려고 하는 자는 정령으로 정해진 수로에 의해 판매장 (총칭해서 판매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동일)으로 그 판매장의 소재지 (판매장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재지의 소속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단지, 주류 제조자가 그 면허를 받은 제조장에서 하는 주류 (당해 제조장에 관해서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판매면허를 받은 주류와 동일한 종류 (품목에 있는 종류의 주류에 관해서는 품목)의 주류 및 제 44조 제 1항의 승인을 받은 주류에 한함)의 판매업 및 주장, 요리점 기타 주류를 전적으로 자

기 영업장에서 음용으로 하는 업에 관해서는 이 제한은 하지 않는다.

전항의 면허를 주는 경우에 그 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박람회장, 즉매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임시로 판매장을 설정해 주류의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자로 인정되는 때는 세무서장은 당해 판매장에 관한 동항의 면허로 인해 기한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7조 제 5항의 규정은 전항의 기한을 정한 면허에 대해서 준용한다.

(면허의 조건)

제 10조 제 7조 제 1항, 제 8조 또는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신청이 있던 경우에 아래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세무서장은 면허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면허의 신청자가 제 12조 제 1호 또는 제 2호 (이것의 규정을 제 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2조 제 5항 또는 제 14조 제 1항 혹은 제 2호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취소 당한 적이 있는 자일 때
- ②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이하 「주류 판매업자」라고 한다)인 법인이 제 12조 제 1호, 제 2호 혹은 제 5호 또는 제 14조 제 1항 혹은 제 2호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취소 당했을 때 (제 1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취소 당한 경우에 관해서는 당해 법인이 제 7호에 규정하는 자에 제 1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취소 당한 때에 관해서는 당해 법인이 제 7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에 그 취소의 원인으로 된 사실이 있는 날 이전 1년에 당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으로 있던 자로 당해 법인이 그 취소 처분을 받은 일부터 3년을 경과하기까지 면허를 신청한 경우
- ③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이며 그 법적 대리인이 전 2호, 제 7호 또는 제 8호에 규정한 자인

경우

- ④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이며 그 직원 중에 제 1호, 제 2호, 제 7호 또는 제 8호에 규정한 자가 있는 경우
- ⑤ 면허의 신청자가 제 1호, 제 2호, 제 7호 또는 제 8호에 규정한 자를 면허 신청에 관계한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 관계한 지배인으로 하려고 할 경우
- ⑥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 전 2년 내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 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
- ⑦ 면허의 신청자가 국세 혹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 혹은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합등에 관한 법률(소화 28년 법률 제 7호)의 규정에 의해 벌금의 형에 처한 처벌을 받든지, 또는 세법 취급법 (명치 3년 법률 제 67호) (지방세법 (소화 25년 법률 제 226호)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혹은 관세법 (세법 (소화 32년 법률 제 37호) 및 특별세법(소화 32년 법률 제 38호)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통고 처분 (과세에 상대한 금액에 관한 통고처분을 제한다)을 받고 각각 그 형의 집행을 끝낸 혹은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지게 된, 또는 그 통고의 취득을 이행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자인 경우
- ⑧ 면허의 신청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끝낸 또는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자인 경우
- ⑨ 정당한 이유가 아닌데도 취득상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진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 ⑩ 주류의 제조 면허 또는 주류의 판매 면허의 신청자가 파신자로 복권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 기타 그 경영의 기본이 박약인 것으로 인정되어진 경우
- ⑪ 주류의 보전상 주류의 수급 균형을 유지할 필요에 의해 주류 제조 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지는 경우
- ⑫ 주류의 제조 면허의 신청자가 주류의 제조에 관해서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어지는 경우 또는 제조장의 설비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초) (소화 37년 3월 31일 제정, 소화 63년 12월 30일 개정)

(주류의 판매업 면허 등의 신청)

제 14조 법제 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주류의 판매업 또는 판매의 대리업 혹은 매매업 (이하 「판매업」으로 총칭한다) 의 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당해 면허를 받으려 하는 판매업의 구분이 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세무서장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신청자의 소재 및 이름 또는 명부
- ② 판매장 (총칭해 판매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동일)의 소재지 및 명칭
- ③ 판매하려고 하는 주류의 종류 (품목이 있는 종류의 주류에 관해서는 품목), 범위 및 그 판매방법
- ④ 박람회장, 직판회장, 기타 이것과 유사한 장소에서 임시로 판매장을 설치해 주류의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그 취득 및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기간
- ⑤ 기타 참고로 되어야 할 사항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합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설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경위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주류업)은 소화 28년 2월에 법률 제 7호로서 제정되어 동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제 1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계의 안정을 위해 주류업자가 조합을 설립해 주류의 수급조정을 행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가 주세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주세의 확보 및 주류의 추징의 안정을 꾀한다」것이다. 제 1조 이하 101조에서 구성된 제 86조

의 6 [주류의 표시의 기준]이 자판기 및 그 영업에 관계하는 조문이다.

또 동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소화 28년 3월에 정령으로 「주류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장성령으로서 「주세 보전 및 주류업 조합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어 있다. 게다가 국세청 고시로서 평성 원년 11월 22일에 「미성년의 음주방지에 관한 표시 기준」이 나와 있다.

자판기에 관련한 정령·성령·통달등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의 4」[표시의 기준] (소화 28년 3월)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화 28년 3월)

「미성년자의 음주 방지에 관한 표시기준 (초)」(국세청 고시 제 9호 평성원년 11월)

「『주류자동판매기에 관한 취급지침』의 제정에 대해서」(평성 7년 7월 과세 1-22)

표시에 관한 규정

● 미성년자의 음주방지에 관한 표시기준

주류자판기에 대해서는 소화 50년 4월부터 전국 소매주류조합중앙회의 자주기준에 의해 미성년자의 음주방지 및 판매정지시간, 관리자 등의 표시가 실시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미성년자의 음주가 사회문제화해 있는 것을 이유로 주류업 조합 제 86조에 기초해 평성원년 11월 「미성년자의 음주방지에 관한 표시기준」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의해 주류자판기의 전면에 보기 쉬운 장소에, 야간에도 판정할 수 있는 명료한 문자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의무화되어 있다.

(1) 미성년자의 음주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
표시에 사용한 문자는 57포인트의 활자 이상의 크기의 동일하게 띄어 쓴 고딕체의 일본문자로서 「미성년자의

주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표시를 표시한다.

(2) 관리책임자의 이름, 운반선의 소재 및 전화번호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는 20포인트의 활자 이상의 크기의 통일해서 띄어 쓴 일본문자로 한다.

(3) 판매정지시간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는 42포인트의 활자이상의 크기의 통일해서 띄어쓴 고딕의 일본 문자로서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판매를 정지하고 있다」표시한다.

●자판기통일 스티커와 다른 주류자판기의 관리자 표시 자판기 통일 스티커의 부착은 소화 50년 11월의 통상산업성, 농림수산성, 대장성 및 후생성에 의해 「자판기에 대한 통일 스티커 부착 실시요강」의 공동통달에 의해 의무화되었으나 평성 2년 3월의 개정에 의해 주류자판기는 부착대상외 자판기로 되어있다. 이것은 주류의 자판기에 관해서는 전술의 국세청 고시 「미성년자의 음주방지에 관한 표시기준」에 의해 관리책임자명, 운반선 주소, 전화번호의 표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류자판기의 야간판매정지

●오후 11시~익일 아침 5시까지 판매를 정지

주류자판기는 오후 11시~익일 아침 5시까지 판매를 정지하고 있다. 이것은 소화 50년 3월부터 전국소매주관조합중앙회가 자규규제로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미성년자의 음주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회에서는 그 후 소화 55년 6월에 「주류소매업에 있어서 주류의 표시기준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자판기에 판매정지시간을 표시하는 것 등을 의무화하였다.

현행의 옥외 주류자판기의 철폐

●옥외의 주류자판기는 원칙, 철폐

전국소매주관조합중앙회는 평성 7년 5월의 총회에서 옥외의 주류자판기의 철폐 방침을 결의했다. 이것은 평성 6년 10월의 중앙주류심의회 산업행정부회의 「알콜 음료

로서의 주류 판매 등의 재상태」(중간보고)에 있어서 제언을 근거로 미성년자가 이용 가능한 옥외 설치의 현행형 주류자판기는 평성 12년 5월말까지로 철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단지 성인의 신분으로 되어진 ID카드를 읽어서 이해하는 장치나 운전면허 인식장치 등을 탑재, 이용자의 연령을 식별해 미성년자의 접근(ACCESS)을 방지할 수 있는 「개량형 주류자판기」에 관해서는 평성 12년 6월 이후에도 설치가 인정되고 있다.

벌칙규정

●판매방지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의 벌칙은 아니다. 단지 전국소매주관조합중앙회에서는 공정 경쟁규약으로 기초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30만엔 이하의 위약금을 부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세청은 평성 7년 7월의 국세청장관부터 국세국장·종합국세 사무소장에 의한 통달 「『주류자판판매기에 관한 취급지침』의 규정에 관해서」에 의해 판매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주류업법에 의해 자판기에 대한 표시를 실시하지 않거나 문자의 크기나 표시 내용에 관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v]